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 변화하여 도민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직위 변경(안 제3조제1항)
  - 환경정책과장 → 업무담당과장
-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
-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변경(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수입증지 →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 5. 검토내용

- 안 제3조제1항은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부서가 환경산림국의 신설로 기존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로 변경됨에 따라 간사를 환경정책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직위를 현행화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알선·조정·재정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재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함께 징수하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안 제5조제3항은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기존 충청북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7. 16.~'21. 8. 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직위를 현재 소관부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과 일치시키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에서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여 도

민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